

제405회 정례회
'22. 12. 5.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2년 11월 18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1일

3. 제안사유

-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이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으로 전부개정(2021.12.7.) 및 시행(2022.6.8.)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「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」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2조)
 - 경력단절여성등, 경제활동 촉진, 경력단절 예방 등
- 도지사의 책무 및 사용자의 책무 규정(안 제3조, 제4조)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, 제6조)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(안 제7조)
-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및 사무의 위탁,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~제10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 개정안은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이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으로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,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상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은 주로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에 한정하여 추진되어 왔음.
- 그러나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애초에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하는 ‘예방’ 기능이 중요함.
-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은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·강화하고 있으며,
- 이에 「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」를 「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」로 전부개정하여, 도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

정의, 도지사의 책무,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2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타당함.

- 안 제5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규정으로,
 -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6조와 제7조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·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조항은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함.

□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

제5조(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우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① (생략)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·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- 안 제6조는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.
 -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8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,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

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충청북도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- 안 제7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취·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으며,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함.

□ **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**

제13조(직업교육훈련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일경험 지원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5조(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.

1.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
2.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·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
3.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
4.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(생략)

- 안 제8조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-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17조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도 단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,

안 제8조는 상위법에 따라 지정받은 충청북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□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

제17조(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)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- 안 제9조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, 안 제10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적인 큰 개인,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, 사무의 위탁 및 포상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전부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」를 「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」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